

인지세 납부 안내

「인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각 1/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구분	세액 구간	세액	
		전체	계약자 부담(50%)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)	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5만원	7만 5천원
	10억원 초과	35만원	17만 5천원
납부기한 및 방법	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,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		

※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입하신 후 전자수입인지를 아파트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(우체국, 은행)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,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/>)에서 발급 가능하며,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(126)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 인지세 구매 방법

‘전자수입인지’ 검색

NAVER (+Mobile) 전자수입인지

네이버 및 그 외 포털 사이트

종이문서용 ‘전자수입인지’ 선택

인전하고 편리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
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
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비회원·회원 로그인 후 구매

납부정보 선택, 기입

출력 및 첨부·보관

오프라인 인지세 구매 방법

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

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
결제 및 전자수입인지 발급

※ 방문 전 해당지점 문의 요망

※ 용도 : 인지세 납부

※ 현금납부만 가능,
발급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ACRO Vestynew